

2022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 2022. 9. 23. (금) 13:00
2. 장소 : 행정관 213호 중회의실
3. 참석 위원(총9명 중 7명)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임효창 기획처장, 정소연 학생·인재개발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추시연 총학생회장, 유상아 부총학생회장, 김혜정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4. 불참 위원(2명)
 - 가. 외부전문가 : 최애라 회계사
 - 나. 동문대표 : 최형심 총동창회장

■ 안건

1.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 대학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안) 심의

■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위원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현 규정에 횡수를 제안했던 이유는 학생 위원들의 총학생회 업무 시작과 동시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 전에 학생 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지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므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안건을 설명해 주거나 차기 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형식으로 1회로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차기 학생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다. 규정에서 회의 개최 횡수가 삭제되지만 회의 운영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행되기를 바란다.

- 규정상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소집이 가능하므로 2회 이상 진행이 가능하다.

추가 논의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묻고 없음에 투표를 진행하다.

전원 찬성하여 규정 개정(안)은 가결된 것으로 하다.

2. 대학원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안) 심의

대학원 교학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기획팀장이 보충 설명하다.

○ 신설된 학과의 재학생 인원과 계절학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 학·연·산 과정의 공공빅데이터학과와 의 경우 입학자가 없다. 학과간 협동과정의 바이오헬스 공학과는 석사 7명, 박사 3명이 재학 중이며 해당 학과에서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수요 조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 후 진행 예정이다.

○ 대학원시행세칙 제56조에 계절학기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6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3학점을 더 이수 할 수 있다는 통계적인 자료가 있다. 이에 따라 계절학기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6학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정규학기 시 최대 9학점을 이수하는데 계절학기 때는 최대 6학점을 이수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정규학기 등록 후 학점 당 등록 시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반액, 4학점 이상부터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적용하면 계절학기 수업료 책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9학점까지 수강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아쉬움은 있으나 계절학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석사과정에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 즉 2개 학기이고 정규과정 이수는 총 4학기이다. 총 수업료 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책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졸업 논문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의 능력에 따라 빠른 기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 일반대학원의 졸업 학점은 총 24학점이다. 정규학기에 18학점(9학점+9학점), 계절학기에 12학점(6학점+6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학점을 충족할 수 있다.

○ 해당 과정은 졸업 논문 선택이 가능한가?

- 대학원의 발전 방향은 협동과정 및 연계 학위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학과들은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또 현재 실무에 재직 중인 자들의 상당한 수요가 있다. 이들의 재교육 및 학문적 경험을 위하여 졸업 논문에 준하는 현장 경험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학과와 차별점이 있다고 보면 되며, 졸업 논문 대체 과목 이수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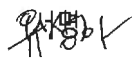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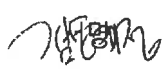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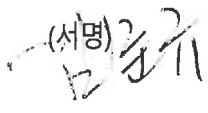
- 1년 내에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수요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기 단축이 가능하며 이를 준용한 것이다.

추가 논의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묻고 없음에 투표를 진행하다.

전원 찬성하여 수업료 책정(안)은 가결된 것으로 하다.

위원장이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에 회의를 종료하다.

2022년 9월 23일

위원장	임효창	
위원	정소연	
위원	하성호	
위원	추시연	
위원	유상아	
위원	김혜정	
위원	김문규	
기록	차은호	